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50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김우영 · 윤종군 · 양문석

염태영 • 박민규 • 김남근

차지호 · 김성환 · 조계원

이재강 · 황정아 · 이광희

김남희 · 황명선 · 정동영

이해식 • 박정현 • 김문수

송재봉 의원(19인)

제안이유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차기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대두된 후,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적 전략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내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조 7,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상용화 추세, 딥러닝 개선, 빅데이터 연계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제조업, 자동차, 금융,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이에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앞다투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률안의 제정에 몰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민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산업 진흥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및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여건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 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

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 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 능사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제제 구축,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2조).
- 아.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위원회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 3.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하다.
 - 가.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제3

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나.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 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다.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 지능
-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 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 사. 「교통안전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 능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 4. "범용 기초모형"이란 대규모 컴퓨터 자원을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하여 광범위한 작업에 응용이 가능한 기초 인공지능을 말한다.
- 5. "고위험 범용 기초모형"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초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여 학습한 범용 기초모형으로 공공 안전, 보건 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기초 모형을 말한다. 다만, 초거대규모 컴퓨팅 자원 및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등의 관련한 기준은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한다.
- 6.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7.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

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8. "제공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9. "운영자"란 자신의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공지능제 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10. "제공자"와 "운영자"를 통틀어 "사업자"라 칭한다.
- 11.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12.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 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인간에 대한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 어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술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 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3.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 법 · 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 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신뢰 확보 및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이 되도록 하고, 특정한 성(性)으로만 100분의 60 이상 구성할 수 없도록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민간위원: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국가기관등, 인공지능사업자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인 공지능협회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하 "권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권고등을 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공무원 및 임 직원, 인공지능사업자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인공지능협회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 술할 사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 다.
- ⑧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 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권고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
- ⑩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 · 분석
- 2.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3.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국민생활의 변화와 적응및 안전한 이용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5.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7. 제6조제6항에 따른 권고등에 관한 사항
- 8. 제26조에 따라 정부가 제정·공표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등에 관한 사항
- 9.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및 고위험 범용 기초모형의 규율에 관한 사항
- 10.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및 고위험 범용 기초모형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12.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자문 또는 위원장이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청 하는 연구·자문·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는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인공지능 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 4. 권고등 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 · 사전검토
-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검토
- ③ 전문위원회(안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국가인공지능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국가인공지능센터(이하 "국가인공지능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국가인공지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 3. 인공지능등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분석
- 4.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실현,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교육·인식개선·홍보
-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으로 인한 국민 안전, 인권 등에 대한 위험요인의 조사·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사회·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 7. 다른 법령에서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국가인공지 능센터에 위탁한 사업
- 8.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인공지능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그 밖에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자금융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사업에 필요한 자금
 - 2. 인공지능사업의 수출을 위한 자금
 - 3. 범용 기초모형 개발에 필요한 자금
 - 4.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 5. 그 밖에 인공지능사업 진흥에 필요한 자금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국세, 지방세 및 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수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기술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 2.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설비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 나 전시장에 출품하는 자
-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인공지능 사업 진흥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2.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 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

- 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내 · 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 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 3. 인공지능기술의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 화 및 사업화 지위
 - 4. 인공지능기술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2.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

- 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의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1조제2 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 발 및 보급 사업
-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 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 올바른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 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수 있다.
- 제16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 능기술의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표준

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개정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 연구개발
-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 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지능 정보화 기본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 (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8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

-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지원
-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 5.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 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3. 제22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 원

-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육성
-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20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국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21조(제도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 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 산업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 2. 산 · 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 3. 인공지능 산업 기반구축에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4.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 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공지능 특성화대학, 인공지능 특성화대학원 또는 인공지능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④ 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인공 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 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 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 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 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 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대한인공지능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등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며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인가를 받아 대한인공지능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인력의 국외 진출 지원
 - 5. 인공지능 관련 기술기준 또는 검·인증 제도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 6.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6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 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 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 정신 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 항
-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 3. 인간과 인류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 각 호의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 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 보·교육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기 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 안과의 연계성 · 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등을 할 수 있다.
- 제27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 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 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 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 5.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8조(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 2. 검 · 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 3. 검 · 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지원
- 4. 검 · 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검 · 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검·인증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 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9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위원회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위 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의견을 인공지능 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는 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확인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 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30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 의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제31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하 "신뢰성 확보조치"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신뢰성 확보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항
- 3.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
- 4. 이용자 보호 방안
- 5.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사항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6. 기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2조(고위험 범용 기초모형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 범용 기초모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고위험 범용 기초모형과 관련한 사업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모형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안전평가 실시결과 및 사이버 보안 조치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모형의 안전평가 분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제33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

- 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연 구 기관
- 2.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 2.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연구
-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감 독
- 4. 해당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연구·개 발·활용 교육
-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윤리지침 마련
-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설치 및 운 영을 위한 준비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